

소 장

원 고 [별지 1]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양홍석, 김철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2 일신빌딩 3층
(전화: 02-2038-3620, 팩스: 02-2038-3621)

피 고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¹
대표이사 하성민

2.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²
대표이사 이석채

손해배상(기)

¹ 거리명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65

² 거리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청 구 취 지

1.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3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3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통신사업자로서 스마트폰 무선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합니다)의 무선통신시장 점유율은 50.3%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고 합니다)의 점유율은 30.8%여서, 피고들의 무선통신시장 점유율 합계는 81.1%에 이릅니다.³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와 각각 3만 원대 또는 4만 원대의 스마트폰 무선통신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갑 제1호증의 1~16).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m-VoIP 서비스 이용을 금지함

원고들은 피고들과 스마트폰 무선통신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공하는 3G 또는 4G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라고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m-VoIP란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카이프 서비스 · 카카오톡의 보이스트톡 서비스 · NHN의 라인 서비스 · 다음의 마이피플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3만 원대 및 4만 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m-VoIP 서비스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갑 제2~3호증)을 작

³ 2012. 12. 31. 현재 이동전화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성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m-VoIP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3만 원대 및 4만 원대의 스마트폰 무선통신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의 m-VoIP 서비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피고들의 이용약관 중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3G요금제	34	44	54	64	78(LG U+ 74)	94		
mVoIP 허용량	SKT		1000분	1500분	2500분	3500분		
	KT		3750분	5000분	7500분	15000분		
	LG U+	150분	250분	1000분	1500분	5000분	5000분	
LTE요금제	34	42	52	62	72	85	100	120
mVoIP 허용량	SKT		850분	1250분	1750분	2750분	3750분	
	KT		2250분	3000분	3500분	5000분	8000분	
	LG U+	150분	250분	500분	1000분	1750분	3500분	5000분

한편,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로 인한 피해는 3만 원대 및 4만 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m-VoIP 서비스 사용이 일정량 허용되는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VoIP 서비스의 특성 상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m-VoIP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데, m-VoIP 서비스 사용이 일정량 허용되는 요금제에 가입한 발신자라 하더라도 수신자가 m-VoIP 서비스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위 수신자와는 m-VoIP를 통해 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목적과 이유

원고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용량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와 같은 용량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원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에 간섭하여 일정한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들에게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게임이나 동영상·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이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듯이, 원고들에게는 m-VoIP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들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m-VoIP 서비스에 대해서만 그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 받고 아울러 그 동안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I.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및 요건

공정거래법 제56조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6조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① 가해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② 피해자의 손해발생 ③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만 입증하면 됩니다.

2.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

(1) 성립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③ 그와 같은 불이익제공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⁶.

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⁶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4695 판결 등 참조

두 번째 요건인 “불이익제공”은 말 그대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거래조건이란 각종의 구속사항·가격 조건·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 등 당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포함합니다⁷.

세 번째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태양과 상품의 특성·거래의 상황·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⁸.

(2) 적용범위

불이익제공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⁹, 피고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¹⁰.

⁷ 피고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라. (1). (가) 참조

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5713 판결 등 참조

¹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라. (1). (다) 참조

특히 우리 법원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피해차주들에게 대차료 · 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¹. 특히, 이 사건에서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은 ‘피해차주들과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단지 피해차주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들과 피해차주들 간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였고 또한 ② 금액의 비중이 크지 않고 미지급율도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차주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방치해 두는 행위 자체가 통상의 거래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이 예견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원은 시중은행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객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².

¹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10누9473 판결

¹²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나.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킴

피고들이 약관에 3만 원대 및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m-VoIP 서비스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인 원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1) 피고들에게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됨

국내 무선통신시장을 각각 50.3%와 30.8%씩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인 피고들이 일반 소비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는 불이익제공에 해당됨

피고들이 이용약관에 3만 원대 및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m-VoIP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인 원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는 점 역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원고들로서는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피고들의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원고들은 몇 배나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음성통화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율은 분당 약 0.4~0.6MB 정도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24~36MB 정도이고,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224~1,836원¹³ 정도가 나옵니다. 한편,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의 요금은 초당 1.8원이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6,480원¹⁴의 요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에 비해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 소비자인 원고들은 약 4~5배 정도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전화를 할 경우 원고들의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원고들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할 경우 데이터 소모에 따른 비용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피고들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할 경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제전화 이

¹³ 피고 케이티가 데이터 요금제에서 제시한 초과 요금 가격인 1MB당 51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결과입니다. 즉, [24~36MB x 51원 = 1,224~1,836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¹⁴ 1.8원 x 3600초 = 6,480원

용요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미국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와 통화할 경우, m-VoIP 서비스를 통해 통화할 수 있다면 데이터 소모에 따른 비용(시간당 약 1,224~1,836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 때문에 피고들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음성통화 서비스 비용(시간당 약 6,480원)과 함께 국제전화 이용요금(시간당 6,000원~12,000원 정도¹⁵)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통화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은 국제전화 이용요금이 가장 싼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제전화의 경우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 때문에 원고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해는 m-VoIP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 3만 원대 및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3)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들은 m-VoI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피고들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약 4~5배 정도의 비용(국제전화의

¹⁵ 미국 기준 국제전화 이용요금은 1분당 100원 ~ 200원 정도임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피해가 3만 원대 및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원고들에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게임·동영상·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m-VoIP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용량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그와 같은 용량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원고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들이 간섭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들의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절대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m-VoIP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대기업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국내 무선통신 시장의 1, 2위 사업자로서 각각 1천6백만 명과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m-VoIP 서비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앞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약 4~5배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제전화 이용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그 손해가 더욱 큽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금지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

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소결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와 같은 손해와 피고들의 금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¹⁶

III. 손해배상의 범위

공정거래법 제57조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실제 법원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¹⁷.

¹⁶ 한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¹⁷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80120, 2013가합513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에 의해 m-VoIP 서비스 이용을 금지 당함으로 써 재산상 손해(4~5배에 달하는 음성통화 서비스 요금 및 그 보다 많은 국제전화 이용요금)를 입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이상 단순히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서 일응 매월 금 3만 원씩 1년치에 해당하는 금 36만 원을 청구하고자 하고, 또한 무선통신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기업인 피고들이 일반 소비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로서 금 100만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귀 원께서는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주된 목적과 이유는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법된다는 점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피고들에게 향후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¹⁸. 따라서, 귀 원이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

¹⁸ 참고로, 만약 공정거래법 상 사인이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면(이를 소위 "행위금지청구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닌 이와 같은 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수용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IV. 결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양망합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합니다)는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방해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와 같은 처분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처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정위는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림에 있어 ①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방해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측면에서 검토한 바가 없고, ② 또한 우리 법원이 대기업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바도 전혀 없으며, ③ 피고들이 3만 원대와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m-VoIP 서비스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근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참고할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의 1~16 | 원고들의 스마트폰 무선통신이용계약 체결 자료 |
| 1. 갑 제2호증 |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WCDMA 이용약관 (발췌본) |
| 1. 갑 제3호증 |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의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발췌본)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부 |
| 1. 소장 부분 | 2부 |
| 1. 법인등기부등본 | 2부 |
| 1. 위임장 | 1부 |
| 1. 담당변호사지정서 | 1부 |

1. 납부서

1부

2013. 9. 30.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 무 법 인 이 공

담당변호사 허 진 민

담당변호사 박 진 석

담당변호사 박 주 민

담당변호사 양 홍 석

담당변호사 김 철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